

#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9. 7. 1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교육과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는 비교과교육총괄부, 전공교육운영지원부, 선진학사제도연구부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조교, 직원, 연구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 등)** ① 센터의 각 부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비교과교육총괄부 :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교육과정 총괄

2. 전공교육운영지원부 : 전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연구

3. 선진학사제도연구부 : 선진학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

② 각 부의 책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,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교육질관리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

2.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3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위원 임기)**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.

**제7조 (운영 세칙)**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9. 7. 1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